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.

발 의 자 : 김태년 · 임오경 · 문정복
안태준 · 이재강 · 이학영
최민희 · 김준혁 · 김기표
허종식 · 이광희 · 양부남
서영석 · 윤종균 · 김영환
정태호 · 손명수 · 김성희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,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,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(지방법인세)으로 전환하는 ‘공동세원화’를 추진함에 따라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.

그러나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법인세가 신설되는 경우,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(예정)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아울러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(益金) 및 손금(損金)불산입 대상에 지방법인세를 명시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

한다는 견해가 있음.

이에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,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3호, 제57조의3 및 제59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태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709호) 및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7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호 중 “법인지방소득세”를 “법인지방소득세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지방법인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3(지방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40조의 7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법인세액을 이 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1호와 제2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57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.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법인세의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방법인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3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)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· 2. (생략) 3.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<u>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</u> 4. ~ 8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) (현행과 같음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법인지방소득세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지방법인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 ----- ----- 4. ~ 8. (현행과 같음) <u>제57조의3(지방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40조의7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법인세액을 이 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</u>

제59조(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)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(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) ① -----

----- 제1호
부터 제3호까지-----

-----.

1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2. ~ 4.</u>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<u>2. 제57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.</u> <u>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</u> <u>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</u> <u>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</u> <u>저 공제한다.</u> <u>3. ~ 5.</u> (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)
--	--